- 시방을 작성하여야 하며 진동치, 속도, 폭력 등 발파 영향력을 검토하여야 한다.
- (5) 암반변화 구간 및 이상암질의 출현시 반드시 암질판별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6) 발파시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야 하며 진동파속도, 폭력, 폭속 등의 조건에 의한 적정한 발파시방이어야 한다.
- (7) 주변 구조물 및 인가 등 피해 대상물이 인접한 장소에서의 발파는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와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.
- (8) 화약 양도양수 허가증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사용기간, 사용량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.
- (9) 작업책임자는 발파작업 지휘자와 발파시간, 대피장소, 경로, 방호의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.
- (10) 낙반, 부석의 제거가 불가능할 경우 부분 재발파, 록볼트, 포폴링 등의 붕괴방지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(11) 발파는 적절한 경보 및 근로자와 제3자의 대피 등의 조치를 취한 후에 실 시하여야 하며, 발파 후에는 불발 잔약의 확인과 진동에 의한 2차 붕괴 여 부를 확인하고 낙반, 부석처리를 완료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.
- (12) 환기가 잘되지 않는 장소에서의 발파작업 시에는 환기설비를 갖추어 가스 배출을 시킨 후 작업하여야 한다.
- (13) 화약류 운반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가) 화약류는 반드시 화약류 취급책임자로부터 수령하여야 한다.
- (나) 화약류의 운반은 반드시 운반대나 상자를 이용하여 소량으로 분할하여 운반하여야 한다.
- (다) 용기에 화약류와 뇌관을 함께 운반해서는 안 된다.
- (라) 화약류, 뇌관 등은 충격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분리 취급하고 화기에